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17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행규정상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고 대상에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나.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LP가스 공급자의 사전 협의 없이 가스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수요자

등”의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요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4조제3항)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2항)

마. 개선 명령 등 유사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함(제52조제3항)

바. 행정청의 과태료의 징수요건과 부과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08. 6.22 시행)」에 따르도록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

정을 폐지함(제52조제5항~제7항)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2-2110-5446,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 ----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 -----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과징금)① · ㉔생략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과징금)① · ㉔현행과 같음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9조에 따라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제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 또는 폐업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유지) ① · ㉔생략 ③ 수요자 등은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유지) ① · ㉔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요자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이하 "수요자등"이라 한다)는 ----- ----- -----.
④ (생략)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생략) ②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 행	개정안
<p>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⑥ (생략)</p> <p>제41조(수수료 등)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p> <p>1. (생략)</p> <p>2. 제1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p> <p>3.~7. (생략)</p> <p>제5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52조(과태료)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2. (생략)</p> <p>3.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p>	<p>-----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의 설치공사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p> <p>-----.</p> <p>③~⑥ (현행과 같음)</p> <p>제41조(수수료 등)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1항 및 제2항에 -----</p> <p>-----</p> <p>-----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를 -----.</p> <p>3.~7. (현행과 같음)</p> <p>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2조(과태료)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2.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정안
<p>유가스 수요자</p> <p>4. (생략)</p> <p>5.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u>액화석유가스 수요자</u></p> <p>6.~12. (생략)</p> <p>③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u>액화석유가스 사용자</u>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u>관할관청</u>”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u>관할관청에</u>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라 <u>관할관청의</u>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u>관할관청</u>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5. ----- ----- <u>액화석유가스 수요자</u> 등</p> <p>6.~12. (현행과 같음)</p> <p>③ 제11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 <u>액화석유가스 수요자</u>에게는 -----.</p> <p>④ ----- ----- ----- <u>구청장</u>이 -----.</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